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18일

서울특별시 중구 회의장

1. 제정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단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 사항 (안 제3조)
- 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안 제4조)
- 라. 우수 봉사 회원 포상 사항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팩스 : 02)3396-9055
- E-mail : queen@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